

#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4~52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일자	2004. 11.
제출자	거창군수

## □ 개정이유

- 지방세 감면조례와 관련된 법률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었으나, 앞으로는 배우자도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같이 되어 있는 경우 면제토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.

## □ 주요골자

- “국가유공자·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·고엽제후유의증 환자” 등 반복되는 어휘로 혼란이 있어 “국가유공자등”으로 그 문구를 간결화 하고,
- 국가유공자 등 배우자도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국가유공자 등과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함.(안 제2조제2항)
-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의 배우자도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장애인과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면제 함. (안 제3조제1항)
- 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 신설(안 제29조의2)

## □ 개정근거

- 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(법률 제7105호 2004. 1. 20)
- 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시행령(대통령령 제18319호 2004. 3. 17)
- 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시행규칙(총리령 제762호 2004. 5. 01)
- 행정자치부 세제과-2271(2004. 10. 28)
- 경상남도 세정과-8785(2004. 11. 01)

거창군 조례 제 호

## 거창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

거창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중 “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” 를 “5·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” 로, “해당하는 자가 본인, 배우자 또는” 을 “해당하는 자(이하 이조에서 “국가유공자 등”이라 한다)가 본인 또는” 으로, “국가유공자·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존·비속, 국가유공자·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” 를 “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, 직계존·비속, 국가유공자 등” 으로, “국가유공자·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”를, “국가유공자 등”으로, “국가유공자·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”를, “국가유공자 등”으로, “국가유공자·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”를, “국가유공자 등과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중 “본인·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” 을 “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,”로 한다.

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9조의2(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) 이 조례 중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.

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

